

수렴청정(垂簾聽政)과

국왕친정(國王親政) 그 사이

청년 성종의 정치리더십에 투영된 정희왕후의 공사(公私) 인식

윤대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조교수, 동양정치사상 전공
dskhan@hanmail.net

I. 머리말

II. 청정(聽政)의 빛: 공적 후원을 위한 타협의 도출

III.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종의 훈육과 자존감 형성

IV. 친정(親政)의 그림자: 방임과 무책임의 변명?

V. 맺음말

이 연구는 202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머리말

일반적인 이해로는 유교적 교의를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한 조선에서 왕조 초기부터 유교적 여성 정체성도 형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여성들이 지켜야 할 행실과 도리에 대한 규범의 소개가 시급한 과제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 특히 유교로 새롭게 변신한 유가사상이 가족주의 도덕으로 이념화하여 부인을 가장인 남편에게 예속된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이나 존재 범위를 가정 내로 국한시켜 봉사과 희생의 규범으로 고착시켰던 점을 고려하면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여성'이 리더로서, 그리고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인공으로 활약했던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극적인 사례가 바로 왕실 최고어른으로서 왕대비에 의한 '수렴청정(垂簾聽政)'이라는 제도이다. 그래서 예단해서도 안 되지만, 조선의 정치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기대와 수렴청정 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과연 수렴청정하는 왕대비는 스스로 각성하여 독자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공적 행위자로서의 위상과 의식을 가졌던 것일까?

기존 조선의 수렴청정 연구는 임혜련의 것들이 가장 돋보인다. 최근 연구성과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조선 후기 '대리정치'의 권한범주와 왕권」(2018), 「19세기 국혼과 안동 김문 가세」(2014a), 「19세기 수렴청정의 공과사」(2014b), 「순조초기 순정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2014c), 「철종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2013a), 「헌종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

1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 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한국문화연구』 13집(2007), 62쪽.

(2013b), 「한국사에서 섭정, 수렴청정권의 변화양상」(2012), 「명종 전반기 재이론과 수렴청정 인식」(2010), 「19세기 수렴청정의 특징」(2009), 「19세기 신정왕후 조씨의 생애와 수렴청정」(2008), 「조선후기 헌종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2005),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2003), 「순조 초반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정국변화」(2000) 등 일련의 연구는 조선의 수렴청정이라는 독특한 제도의 공사(公私) 경계와 양상을 다루고 있다. 즉 기존 수렴청정한 왕후들의 연구가 여성의 정치활동, 수렴청정을 통한 정치참여 형태와 국정운영 방법, 외척을 중심으로 한 훈척정치의 실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수렴청정 제도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던 반면 임혜란의 연구는 수렴청정 제도의 출현과 정의, 운영방식을 정리하고 그 배경에서 왕후의 역할과 당대 정치변동의 상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의 역사에서 수렴청정했던 왕후는 정희왕후(세조비), 문정왕후(중종비), 정순왕후(영조비), 순원왕후(순조비), 신정왕후(익종비) 등 총 5명이다. 임혜란은 기존 5명의 수렴청정 왕후 외에 선조 대 명종 비 인순왕후의 수렴청정까지 6명이 실제 청정했지만 청정기간이 짧았고 사림 세력의 본격적인 중앙정계 진출에 따라 왕후의 정치참여를 비판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5명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 김우기(2001), 한춘순(2002), 함영이(2015)의 연구는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희왕후가 보여준 리더십의 실체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로서 수렴청정의 왕후가 발휘한 리더십에 의해 향후 친정에 돌입하는 국왕의 초기 리더십 형성도 영향 받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여성 리더’로서 청정하는 ‘왕후’의 리더십을 공사(公私)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하려고 한다. 하나는 왕후의 수렴청정이 국왕에 대한 정치적 후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공적 경로를 통해 전개되어 나가는 긍정적 측면과 다른 하나는 왕후의 수렴청정이 국왕에 대한 사적 돌봄의 강박으로 인해 공적

경로를 통해 변질되어 나가는 문제점을 타진함으로써 보다 양가적인 관점에서 친정에 나선 국왕의 통치행태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 중에서 최초로 수렴청정 했던 '세조 비 정희왕후'가 공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인지하고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가 후원했던 성종(成宗)에 대한 사적 돌봄의 경계 짓기가 얼마나 분명했는지 여부를 성종의 국왕교육과 친정의 순간 맞닥뜨린 제현왕후 폐출사건을 추적하여 공적 후원의 성공을 빛으로, 사적 돌봄에의 집착을 그림자로 대조하려고 한다.² 특히 수렴청정의 공사 경계 짓기가 처음이었다는 사실 하에, 본 연구는 정희왕후의 공적/사적 동기라는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하여 그 경계 짓기에 대한 결과로 인해 소년 성종에서 청년 성종으로 친정에 나선 초기 성종의 리더십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타진하려 한다.

II. 청정(聽政)의 빛: 공적 후원을 위한 타협의 도출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은 성종 즉위를 둘러싼 정희왕후(1414-1483)의 청정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예종이 즉위 13개월 만에 급서하면서 왕위계승 문제가 발생한다. 당시 예종과 안순왕후 사이에 원자로 제안대군(3세)이

2 성종의 정치리더십을 주제로 한 정치학 분야 연구 성과는 방상근의 「수성에서 교화로: 세종과 성종의 리더십 비교」(2019), 「성종과 포황(包荒)의 정치: 심술(心術) 논쟁을 중심으로」(2012), 「철인왕 성종의 설득적 리더십」(2011a), 「성종의 중재적 리더십과 태평의 정치: 소인논쟁을 중심으로」(2011b)와 송재혁의 「정치가 성종의 불교정책」(2016)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성종을 정치리더(political leader) 또는 정치가(statesman)라는 공적 행위자로 규정하고 그 구성요건으로 성종의 정치적 삶과 정신이 현실정치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통해 정신과 활동의 정합성 여부를 검증함으로써 성종의 리더십 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있었지만 결정권을 지닌 왕실최고어른으로서 정희왕후는 죽은 의경세자(덕종 추존)의 둘째 아들인 잘산군(者乙山君)을 예종과 안순왕후의 양자로 입적시켜 보위에 오르게 한다.³ 바로 이 과정에서 정희왕후와 한명회 간 정치적 결탁이 의심받을 수 있다. 비록 제안대군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를 모두 수긍했다 할지라도, 잘산군 역시 13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잘산군이 원상(院相)이었던 한명회의 사위(공혜왕후 한씨)라는 사적 관계가 의심받을 만한 요소이기도 했다. 더불어 훗날 폐비가 되는 숙의 윤씨(제헌왕후)는 신숙주의 조카이기도 했다.⁴

그렇다면 정희왕후는 한명회와 특수한 사적 친밀성 때문에 장남인 월산군을 체쳐두고 굳이 차남인 성종을 택했던 것 아닐까? 아니면 한명회, 신숙주로 대표되는 훈구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성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일까? 먼저 정희왕후와 한명회 간 정치적 결탁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면, 그것은 양자 간 혈연관계에서 찾아질 것이다. 정희왕후는 판중추부사 윤번(尹蕃)의 일곱째 딸로 태어났다. 윤번은 음서직으로 관직에

3 『성종실록』 「충서」에 보면 의경세자가 죽은 후 세조가 직접 성종을 궁중에서 양육하며 대단히 사랑했다고 한다. 세조 7년에 자산군(者山君)에 봉해졌고, 다시 7년 뒤에 자을산군(者乙山君)으로 고쳐졌는데, 동북형인 월산군과 운을 맞추기 위해서였음을 고려할 때, ‘잘산군’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이한우, 『성종, 조선의 태평을 누리다』(해냄출판사, 2006), 49쪽.

4 제헌왕후 윤씨의 부친은 봉상시 판사 윤기견(尹起堅)이고 어머니는 고려 신씨이다. 외할아버지 신평(申枰)은 신숙주의 숙부였기에, 신숙주는 제헌왕후의 외당숙이 된다. 또한 한명회의 큰 딸이 신숙주의 장남 신주(申澍)의 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명회 역시 자신의 딸 공혜왕후를 잃고 성종이 윤씨를 계비로 들일 때 심정적으로 큰 거부감을 갖지 않았을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잘산군의 부인이 한명회의 딸이었기 때문에 한명회의 영향력으로 성종이 왕위에 오를 것처럼 이해하지만, 성종이 아닌 월산대군이 즉위했다라도 한명회의 권력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겠는가를 반문해 볼 때 그 영향력을 과도하게 상정할 필요가 없다. 송용섭, 「조선 성종의 준행과 국왕으로서의 권위 창출」, 『역사와 담론』 85집(2018), 129-130쪽.

진출했고 일컬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줄기의 평가를 보면⁶, 본인의 정치적 역량이 정희왕후를 뒷받침할만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윤번의 부친은 고려 말 판도판서 윤승례(尹承禮)이고 조모는 문하시중 성여완의 딸이었다. 윤승례는 윤척(尹陟)의 5남인데, 그의 셋째 형 윤승순(尹承順)이 고려 말 문신으로 공양왕 때 판개성부사를 역임했고 그 사위가 바로 한성부윤을 역임한 한상환(韓尙桓)이다. 그리고 윤승순의 손자인 윤호(尹壕)의 딸이 성종의 두 번째 계비인 정현왕후 윤씨이다.⁷

윤번은 3남 7녀를 두었는데 장녀가 인수대비의 외숙부가 되는 홍원용(洪元用)의 처이고, 차녀는 성삼문의 재종숙인 성봉조(成奉祖)의 처, 6녀는 한명회의 재종형제인 한계미(韓繼美)의 처가 된다. 따라서 파평 윤씨 집안과 청주 한씨 집안은 겹사돈 간이고, 정희왕후에게 한명회의 종조부는 당고모부, 6촌 형은 형부가 되는 셈이다. 그것은 한명회의 두 딸이 정희왕후의 둘째 며느리와 둘째 손자며느리라는 사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명회의 출사 이전부터 이미 양자 간 오랜 사적 친밀성을 웅변하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정희왕후가 성종을 선택하는 국면에서 공적(公的) 동기는 전혀 없었던 것일까? 1469년 11월 28일 예종이 서거하자 신숙주·한명회·구치관·최항·홍윤성·조서문·윤자운·김국광 등 대신들은 정희왕후에게 상주(喪主)의 결정을 요구한다. 정희왕후는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월산군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자산군은 비록 나이 어리지마는 세조께서

6 『세종실록』 30년 9월 5일.

7 조선 건국이후 윤승순의 아들인 윤곤이 개국공신에 책봉되어 태종과 세종의 신임을 받았고, 윤곤의 조카인 윤계동이 태종의 부마가 된다. 이후 파평 윤씨 가문은 왕실과의 혼인관계를 통해 본격적인 가세의 성장을 보이는데, 정희왕후가 세조와 혼인하고 정현왕후가 성종의 계비가 되며 절정에 이룸으로써 성종 대 섭정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김우기, 「조선 성종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조선사연구』 10집(2001), 173-175쪽.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게 건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主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⁸라고 세조의 유지를 앞세우자 모두가 동의한다. 이에 정희왕후는 종친과 백관들을 근정전에 불러 모아 잘산군 이혈(李堧)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교지를 내린다.

이와 같이 공적 동기의 맥락에서 접근할 경우, 정희왕후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배태한 이율배반성을 해결하려는 합리적 선택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우선 하나는 세조의 정치적 유산, 즉 찬탈의 혐의를 벗지 못한 숙부의 즉위(세조)-죽은 장남을 대신한 차남의 계승(예종)-병약한 장남을 대신한 차남의 계승(성종)으로 인해 여전히 적장자 계승에서 벗어난 정통성의 문제 해결이다. 다른 하나는 훈구세력과의 긴장관계인데, 권람·한명회·신숙주도 명실상부 의정부를 장악한 훈구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이시애의 난을 기점으로 세조와 훈구의 긴장관계는 출발했다. 그것은 한명회·신숙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반면 귀성군 이준 같은 종친, 조석문·강순·박중선·어유소·김교·이숙기·남이 등 무장들, 유자광·김국광 등의 문신들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는 비대칭 양상으로 나타났고, 측근 정치로부터 중실 정치로 전환하는 더 폐쇄적인 운영의 전조이기도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세조 치세 마지막 해인 14년 서현정에서 활쏘기 놀이를 하면서 연회를 베푼 일이었다. 세조는 연회에 참석한 기녀들에게 “누가 대장군인가? 귀성군이로다. 누가 천하를 평정하였는가? 귀성군이로다. 누가 천하의 인물인가? 귀성군이로다. 누가 소자(少子)인가? 귀성군이로다. 누가 대훈(大勳)인가? 귀성군이로다.” 라고 노래 부르며 하고선 한명회에 대해서는 “누가 원훈(元勳)인가? 한명회로다. 누가 구훈(舊勳)인가? 한명회

8 『성종실록』 즉위년 11월 28일.

로다. 누가 신흘(新勳)인가? 귀성군이로다.”라고 노래 부르게 하고 잔치를 마무리한다.⁹ 그것은 귀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신흘세력의 부상을 세조 자신이 기획하고 후원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운명을 같이 했던 한명회를 비롯한 구훈세력들에게 권력변동의 단서를 시사한 것이었다. 결국 조선왕조 역사상 최연소(28세) 영의정이 된 귀성군을 중심으로 신흘세력의 부상은 기존 훈구세력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구훈세력이 반격의 계기로 삼은 것은 예종 즉위 직후 발생한 남이의 역모사건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흘세력이 죽임을 당하고 이를 주도한 자가 바로 한명회이다. 이 때 국왕과 훈구 간 긴장관계가 고조되는데, 예종이 종친을 제외하는 예외를 두었기 때문이다.¹⁰ 그 후 귀성군 사람인 전중생의 독직 사건이 발생했고 귀성군과 한 몸으로 평가받는 영순군의 사람인 이말중도 역모혐의로 처벌받는 등 종친들 중 유력자들은 구훈세력에 의해 견제 받았다.¹¹ 이러한 구훈세력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조처는 성종 1년 한명회가 “지금 2품 이상의 집은 분경(奔競)의 금령이 지나치게 엄중하여 비록 유복친이나 이웃 사람일지라도 서로 교제할 수가 없으니, 태평 세상의 좋은 일이 아닙니다”¹²라고 분경금지법을 폐단으로 규정하고 없앨 것을 요구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¹³ 청렴과 부패방지를 위해 설치한 금령을 없애자고 훈구대신이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은 엉뚱한 제안으로

9 『세조실록』 14년 5월 1일.

10 『예종실록』 즉위년 10월 27일.

11 『예종실록』 1년 10월 15일.

12 『성종실록』 1년 1월 11일.

13 분경(奔競)이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준말로 이익을 향해 경쟁적으로 고위 관리 집을 찾아 간다는 의미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이를 법전에 성문화했고 하나의 원칙으로 간주되어 부정 예방의 큰 의미를 가졌지만, 친인척 간 왕래를 지나치게 금지하거나 업무상 방문을 오인하는 등 불평을 낳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조남욱, 「조선시대 부패방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그 현대적 수용」, 『국민윤리연구』 55호(2004), 12-14쪽.

비칠 수도,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도 있다.

왜 한명회는 이런 터무니없어 보이는 제안을 했던 것일까? 그 해답은 귀성군 이준의 공격에서 구체화한다. 성종 1년 1월 2일 직산의 생원 김윤생이 성군관 직장 최세호의 귀성군 응립 계획을 고변한다. 한명회는 의정부 위관으로 임명되어 최세호의 국문을 담당하는데 한계미의 고변으로 권명회의 국문까지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 신숙주·한명회·구치관·홍윤성 등은 정희왕후에게 “이준이 비록 작은 공로가 있지만 돌볼 것이 되겠습니까? 원컨대 선왕(先王) 때의 죄를 다스려서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외방에 유배시키소서. 이것이 사실은 보전시키는 것”¹⁴이라는 타협안을 건의한다. 물론 귀성군에 대한 조처는 이미 세조에 의해 일단락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정희왕후 역시 거부한다. 바로 여기에서 신숙주가 수렴청사(垂簾聽事)를 건의하고 정희왕후의 허락을 받아낸다.¹⁵ 즉 이 지점에서 성종 즉위를 둘러싼 왕실과 구훈세력 간 정치적 타협이 모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구훈세력이 지속적인 귀성군 탄핵을 통해 종친의 정치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공격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수렴청정을 통해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맡는 대가로 정희왕후의 종친방어를 용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왕실과 구훈세력 간 정치적 타협이 대비의 수렴청정 일 수 있다.

14 『성종실록』 1년 1월 13일.

15 정희왕후는 수렴하고 국왕과 직접 정사를 담당하지 않고 성종을 통해 간접정치를 수행함으로써 왕후의 정치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 동시에 원상들의 발언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혜련,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27집(2003), 42-47쪽.

Ⅲ.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종의 훈육과 자존감 형성

성종의 왕위계승은 예종 급서라는 돌발상황에 의한 것이었다. 이 상황은 정상적인 세자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왕위계승이라는 점에서 성종 자신에게도 수렴청정 중 국왕훈육을 완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주었다. 그렇다면 정희왕후의 청정과 훈구대신들의 국정장악이 타협점을 찾은 이상, 어떠한 정치적 기반이나 지지 세력도 없는 어린 국왕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그것은 빠른 시간 내에 권위를 인정받는 국왕으로의 정체성을 갖추는 일이다.¹⁶

그래서인지 “왕은 총명영무하시고 관인공검하시며 경사(經史)에 관통하고 성리학에 더욱 조예가 깊으시며 (...) 대신을 존경하시고 대간을 예우하시 조용히 상의하시고 허심으로 채택하여 받아들이시며, 강관을 사랑하고 대우하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매양 경연에서 힘써 받아들이다”¹⁷라는 사후 평가처럼, 성종은 호학(好學)과 삼사(三司)를 중심으로 언로의 개방성을 확장한 성리학 교의에 충신했던 군주로 평가받는다. 재위 25년 동안 총 8,748회¹⁸에 걸쳐 경연에 참석했던 학문에 대한 열정은 성종이 몸이 좋지 않았을 때, 경연을 2-3일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승지의 요청에 긴박한 병이 아니지만 이에 응하겠다는 성종의 답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¹⁹,

16 송용섭(2018), 앞의 논문, 131쪽.

17 『성종실록』 「부록」 <誌文>.

18 성종은 재위기간 조강 3,774회, 주강 2,324회, 석강 2,142회, 야대 508회 등을 참석했는데 집권 중반기까지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했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성종은 집권 8년 이후 폐비 윤씨와의 불화, 원상제도 폐지와 함께 왕권강화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독서력이 감소하게 되어 훗날 경연의 중요성을 희석시킨 결과로 이어졌다. 김중권, 「조선조 경연에서 성종의 독서력 고찰」, 『서지학연구』 32집(2005) 참조.

19 『성종실록』 7년 10월 24일.

그의 치세 동안 호학에 따른 문풍이 진작되어 문장과 학문에 소양을 갖춘 인사들이 중용되는 우문정치(右文政治)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²⁰

그런데 소년 성종의 경연은 정희왕후가 직접 참여할 수 없고 원상들과 성종만의 직접적인 대면자리였다. 그것은 어린 국왕에게 원상들의 정치적 경륜과 숙련도를 전해주는 자리일 수 있지만, 거꾸로 원상들이 어린 국왕을 조종하고 세뇌시킬 기회일 수도 있다. 정희왕후는 원상들에게 우회적으로 대신들과 접견하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몰라 부담스러워했다는 과거 예종의 토로를 전하면서, 어린 국왕이 경연에서 대신들을 대면하는 것을 어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한명회와 구치관이 대신의 접견을 회피할 수는 없는 일이고 처음에 어렵더라도 익숙해지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회유한다.²¹

성종의 첫 경연에는 신숙주, 윤자운, 동지사 정자영, 대사헌 이극돈, 대사간 강자평, 시강관 유권 등이 참여했는데, 『논어』를 진강하며 성종이 음독과 해석을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당연히 성종의 첫 경연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욱이 성종은 『논어』에 나오는 왕손가와 『소학』에 나오는 왕손가도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²² 이에 정희왕후가 “주상께서 처음 배우면서 어찌 능히 환하게 알겠는가? 후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고 분석하여 진강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두둔하며 승지 정효상에게 맡기기를 요청하지만, 신숙주가 첫 진강이라는 점을 들어 그대로 진행할 것을 독려한다.²³ 그에 반해 성종은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태도를 취한다. 예종의 발인이 있고 초우제를 진행한 다음날에도 경연에 또 참여하자 한명회와

20 송용섭, 「조선 성종의 우문정치와 그 귀결」, 『규장각』 42집(2013), 3-8쪽.

21 『성종실록』 1년 1월 2일.

22 『성종실록』 1년 1월 25일.

23 『성종실록』 1년 1월 7일.

최항이 피로함을 이유로 경연참여를 만류함에도 “내가 하루라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면서 경연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다.²⁴ 사실 성종의 적극성은 원상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경연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만큼 어린 국왕의 학습능력이 진일보할수록 각성도 빠를 가능성이 크고, 그 결과 양분하고 있던 권력의 양도 역시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희왕후-원상들-성종으로 정립된 통치구조는 외형상 정희왕후-원상들 간 균형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종의 자기학습 의지와 국왕으로의 정체성 형성이 빠른 진척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성종 자신이 균형의 한 축을 담당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그와 같은 추론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국왕으로서 성종의 자존감이 더 분명히 표출된 사실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활쏘기 구경을 둘러싼 원상들의 의도와 성종의 의지가 충돌하는 장면에서 선명해진다.

한명회가 활쏘기 연습을 구경하도록 권유하자 성종은 원상들에게 이를 의논하게 한다. 신숙주와 구치관은 “지금 바야흐로 경연에 힘쓰고, 3년 안에는 활 쏘는 것을 구경할 것이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성종이 병조와 도총부 장령에게 활쏘기와 진용연습을 명령만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²⁵ 원상들이 성종으로 하여금 3년 간 경연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자 성종의 즉각적인 대응은 외형상 원상들의 의중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것이었지만, “전일에 원상이 혹 활 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을 불가하다 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문신은 혹 경연을 인하여 자주 인견하지마는 무신은 접견을 하지 못하니, 금후로는 매월마다 활 쏘는 것을 구경함을 인하여

24 『성종실록』 1년 2월 6일.

25 『성종실록』 1년 2월 30일.

접견”²⁶하겠다는 답변을 통해 논리적으로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기의지를 관철시킨다.

또한 경연이 시작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대사간 김수녕이 석강의 시행을 건의한다.²⁷ 그리고 일주일 뒤에 대사헌 이극돈도 “제왕이 이치를 연구하고 성품을 다하여 몸을 닦고 사람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거론하며 경연의 제도화를 건의한다.²⁸ 물론 1일 2회의 경연을 제도화하자는 것은 “간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당한 의논을 즐겁게 여기는 것을 유념하시고 (...) 대신을 예로써 대하고 군신의 처지를 이해하여 주는 것을 유념”²⁹해야 한다는 간언 수용과 대신들에 대한 예우에서 비롯했지만, 건의의 저변에는 이 과정을 통해 시무의 직접 전달이라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그렇게 보면 대간들의 실질적 의도는 원상들의 비대한 권력증대를 견제하기 위해 원래의 간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제도화할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원상들의 독점적 지위와 전횡의 가능성을 투명성과 공개성으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다. 성종의 입장에서도 언로의 활성화는 성리학적 성왕군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동시에 원상에 대한 대간의 탄핵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³⁰

관건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간의 역할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성종 자신

26 『성종실록』 1년 3월 12일.

27 『성종실록』 1년 2월 14일.

28 『성종실록』 1년 2월 22일.

29 『성종실록』 1년 2월 22일.

30 성종시대 군주-대신-대간 사이의 대립과 논쟁이 격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유교이념의 내면화라는 교화의 문제가 현실정치에 투영되어 세조대 훈구대신들에 대한 도덕적 문제제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에 성종이 대신과 대간들의 대립을 중재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설득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접근방식도 제기된다. 방상근 (2011b), 앞의 논문 참조.

이 공사(公私)의 경계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공사의 경계 짓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후원자 내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중심에 홍문관이 있다.³¹ 성종 9년 예문관을 홍문관으로 개칭하고 감찰과 간언기능을 수행하는 언관화 과정을 거쳐³²,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언론 삼사(三司)로 자리매김한 것은 언로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성종을 평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³³

그렇지만 성종은 왜 제도적 근거도 없던 홍문관에 간언과 감찰기능을 허용했던 것일까?³⁴ 물론 공론정치의 계승이라는 점을 의식했던 것일 수 있다. 반면 13세 국왕의 존재 자체가 훈구세력의 위상과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일 수 있다. 외형상 원상들은 어린 성종을 보호하면서 세조대보다 권력이 신장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국왕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야 유지될 수 있는 친위세력의 속성상 그만큼 취약해졌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성종 역시 친정체제로 진입하는 집권 7년

31 와그너는 성종이 삼사의 기능을 광의로 해석하는데 찬성했으며 그들의 간쟁 활동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이 철저한 유교적 군주로의 특징도 있지만 왕위 계승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즉 조부 세조의 경우처럼 자신의 또는 자신을 둘러싼 집단의 모의를 통해 왕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 내 어느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의무 같은 것이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해 관리들을 유례없이 공평하게 다루었고 그들의 성품이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와그너 저, 이훈상·손숙경 역,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일조각, 2007), 90-91쪽.

32 최승희, 「홍문관의 성립경위」, 『한국사연구』 5호(1970), 110-114쪽.

33 최이돈, 「성종대 홍문관의 언관화 과정」, 『진단학보』 61호(1986), 6-24쪽.

34 김범은 관서의 기본임무와 관원의 개별적 성향 간 상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법전에 규정된 관서의 기본임무가 보다 우선적인 영향력을 지녔음을 지적한다. 삼사가 상대적으로 나이와 품계가 적은 신진관료들이었기 때문에 노획한 대신들을 견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임무 자체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대신과 삼사의 임무는 매우 달랐고 고정적이었지만 구성원은 언제나 유동적이었으며 긴밀한 인적 연속성을 갖는 순환적 구조였다는 것이다. 김범, 『연산군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글항아리, 2010), 32쪽, 130쪽.

이후 시점에서 영향력이 점차 감퇴하고 있는 훈구세력보다 새로운 친위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는 의미였고, 결국 홍문관원들에게 대한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³⁵

IV. 친정(親政)의 그림자: 방임과 무책임의 변명?

성종의 친정과 리더십 형성의 성립 선행조건으로서 수렴청정은 정희왕후와 성종 모두에게 공적 행위자로의 각성을 불러오고 친정에 나서게 될 성종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국왕으로서 공사 경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처신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우선 수렴청정 기간 동안 공적 행위자로서 정희왕후의 정치적 역량을 드러낸 첫 번째 사안은 호패법 폐지였다.

호패법은 태종 때 폐지 후, 세조 4년(1458) 호구파악을 위해 호적제도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되살리자는 신숙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세조 5년(1459) 2월 1일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세조가 부활시킨 이유 역시 “양천(良賤)을 변별하는 것·유망(流亡)을 금지하는 것·도적을 종식시키는 것”³⁶을 목적으로 한 국가대사였기 때문이고, 그 저변의 목적으로 군역을 부담시킬 인적자원 확보와 함께 군액(軍額)이라는 조세부과를 위한 제도정비의 의지가 깔려 있었다.³⁷

문제는 호패법 실행을 위해서는 양민과 천민들의 신분확인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작업이 많은 인원들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35 송웅섭,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한국문화』 50집 (2010), 33쪽.

36 『세조실록』 11년 10월 28일.

37 오영선, 「조선전기 한성부의 호적업무」, 『서울학연구』 20호(2003), 51쪽.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양인들이 신분확인 제도와 절차의 미비함을 이용해서 균역회피를 위해 스스로 천민이 되려고 하는 등 호패법 실행으로 인해 백성들의 간위(姦僞)를 조장할 위험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신료들의 지속적인 반발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³⁸ 그것은 아마도 호패법 실시가 발미가 되었던 이시애의 난에 대한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³⁹

그러나 호패법이 주관부서로 호조나 병조가 아닌 예조의 사안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 주의하면, 단순히 균역의 사안으로만 파악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찬탈의 심리적 부담을 가졌던 세조에게 가장 민감한 군사적 사안이야말로 그 자신이 완전히 장악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는 국왕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자발성을 기대했던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예조판서 원효원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간위에 대한 조처를 마련하라는 세조의 요구에 맞추어서 양민과 천민의 신분확인 후 호패를 발급하지 말고 무조건 외모, 성명, 연령만을 써서 차고 다니도록 하면

38 『세조실록』 11년 10월 28일.

39 당시 호패법 실행반대의 이면에는 호패법을 함길도 북쪽 지역까지 확대해서 호적을 정비함으로써 균역 관련 사항들을 중앙정부가 장악하려고 했던 이유와 함께 직전법이 동반되었던데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 조준의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과전법은 공신과 관료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로 다시 환수했던 토지제도였다. 물론 관습적으로는 토지가 세습되었기 때문에 과전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졌지만, 이로 인해 새롭게 충원되는 관료들에게 점차 분배할 토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더욱이 세조 치세에 4차례에 걸친 공신책봉이 이루어졌고 단종 복위사건의 저변에도 분배를 둘러싼 이너서클 간의 갈등이 촉발되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직전법이 시행된 배경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시애의 난은 중앙정부가 균역과 토지소유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이었고, 이 경우 중앙정부의 주요 신료들도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판단에서 일부러 연루시킬 수 있었던 것일 수 있다. 즉 세조가 보법(保法)에 의한 균역제 개편과 직전법을 실시하는 강력한 집권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조정 중신들의 이해와도 상반되어 상당한 비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기에 한명회·신숙주 연루설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간위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지경에 이른다.⁴⁰ 당연히 그것은 세조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다. 결국 세조도 예조판서의 답변이 대단히 우월하다고 지적하면서 양인의 균역의무와 천민과의 구분 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조하지만, 호패법은 조정 중신들의 이해와 상반되어 세조와 한명회·신숙주 간 불편한 관계의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원상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했던 정희왕후는 가장 민감한 사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성종이 즉위한 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12월 4일 정희왕후는 한명회·최항에게 “옛날에 내가 세조의 거동을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 울면서 호소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가 호패와 균적의 불편함을 말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싫어하고 괴롭게 여김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무엇이 나라에 이익이 있겠는가?”⁴¹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호패와 균적의 법을 개혁하려는 의중을 전달한다. 느닷없고 파격적인 제안에 한명회와 최항도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육조의 판서 이상 관원들을 소집하여 의논한 결과 조정 중신들은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한 이상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입장과 그대로 두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⁴²

이제 주도권은 다시 정희왕후에게 넘어온 셈이다. 이틀 후 정희왕후는 의정부에 명하여 호패법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 “죽은 사람이 또한 많은데도 한 사람도 호패를 돌려주는 이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호패가 없는 사람이 서로 빌려 가지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간사한 짓이 불어나고 형벌은 번거로워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법의 시의성이 상실되어 폐지한다는 것이었다.⁴³ 그것은 백성들이 ‘간사해지고 거짓 되는’

40 『세조실록』 11년 10월 28일.

41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4일.

42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4일.

43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6일.

윤리적 문제로 접근했던 세조와 신료들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편 정희왕후만의 문제의식, 즉 백성들의 빈곤함을 가중시키고 형벌의 번거로움과 고통을 주는 폐단으로 인지했다는 사실을 돋보이게 한다. 그렇게 보면 백성들의 생존과 편의를 위협하고 마음을 사지 못하는 폐단을 과감하게 없앴다는 점에서 정희왕후의 판단과 결정은 성종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후원자로서의 돌봄과 배려일 수 있다.⁴⁴

정말 그런 것일까? 이 시기 호패법 폐지와 상반되는 사안 중 하나는 지방향리 자제들을 서울로 불러 모아 사역시키는 기인(其人) 제도 부활의 요구였다. 원상 신숙주·한명회·최항·홍윤성 등이 국상 중 명나라 사신이 오게 되어 관사의 노비수효가 적어 일시적으로나마 기인을 선발하자는 제안에 정희왕후는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⁴⁵ 왜냐하면 그것은 외교사안에 대한 원상들의 판단일 뿐, 백성들의 생존과 안정에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원상들과 다른 맥락에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정희왕후의 이런 모습은 그가 일정부분 독자적인 생각과 판단의 행위자였음을 드러낸다.

정반대 사례는 간경도감의 철폐를 둘러싼 성종과 신료 간 갈등의 심화에서 찾아진다.⁴⁶ 예종의 국상을 진행하면서 정희왕후는 불교의례에 따를 것을 전교하는 등 공공연히 불교의례를 진행했고 신료들 역시 인간적인

44 함영이, 『정희왕후』(말글빛냄, 2015), 90-92쪽.

45 『성종실록』 즉위년 12월 10일.

46 『성종실록』은 성종을 전형적인 유가적 군주로 평가하고 있고 성종 23년 시행된 도승법(度僧法)의 정지와 금승절목(禁僧節目)의 시행을 대표적인 배불정책으로 추앙하고 있다. 그러나 도승법만을 두고도 23년 간 대간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하고 성종이 이들의 요구를 계속 반대하면서 결국 일시정지라는 조처를 내린 것에 불과했다. 현실정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조율하며 현안을 타개해 나갔던 정치가로서 성종의 면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재혁, 「정치가 성종의 불교정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5권 1호(2016)을 참조.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어 성종 1년 대사간 김수녕은 석강 시행, 평안도 부세의 감면, 서경법 회복, 투화 왜인과 야인에 대한 선별, 간경도감 철폐 등을 건의하며 유신(維新)의 치국을 요구한다. 이에 성종은 의론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간경도감의 경우 세조가 설치하고 아직 업무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종료된 후에 혁파할 것이라고 답변한다.⁴⁷ 두 달 뒤 김수녕은 성종에게 국가시무책 5조목을 건의하는데, 그 중에서 간경도감의 철폐를 반복하고 있다. 원상들 역시 사간원의 건의가 모두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성종의 답변은 여전히 다시 살펴서 시행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반응이었다.⁴⁸

이제 사간원과 상소라는 공개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진 이상, 개별경로로 우회해서 성종을 압박한다. 바로 경연을 통한 직접적인 상신이다. 성종의 경연에서 시강관 유지·김계창·임사홍 등이 지속적으로 간경도감에서 불경을 간행하는 일과 불경수입 금지를 요구한다. 성종 2년에 들어서도 대사간 김수녕이 “한 나라의 신민들이 유신(維新)의 교화(教化)를 그리고 바라면서 모두 말하기를, 전하께서 장차 간경도감을 파(罷)하시고 장차 불가를 내치시어 환연히 삼대의 성(盛)함을 돌이킬 것”⁴⁹이라는 기대감을 전달하며 압박을 가하는 등 끊임없이 간경도감 철폐를 제기했고, 대사헌 한치형까지 가세하여 시무 17조를 상소하며 그 첫 번째로 간경도감의 철폐야말로 호패법 폐지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자 유신의 교화를 맑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⁵⁰ 결국 성종은 간경도감을 혁파한다.⁵¹

47 『성종실록』 1년 2월 14일.

48 『성종실록』 1년 5월 3일.

49 『성종실록』 2년 1월 21일.

50 『성종실록』 2년 6월 8일.

51 『성종실록』 2년 12월 5일.

흥미로운 점은 간경도감 철폐와 유신(維新)의 정치 요구가 성종의 친정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대간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성종 7년, 정희왕후는 언문편지를 원상들에게 전달하고 청정의 종결을 알린다.⁵² 물론 성종과 원상들 모두 만류했지만 정희왕후의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마침내 성종이 의정부에 교지를 내려 “은 나라의 번거로운 사무로 성체를 수고롭게 하는 것도 또한 편안히 봉양하는 도리가 아니므로, 이에 마지못해서 지금부터는 무릇 국가의 모든 정사는 내 뜻으로써 결단하고 다시는 대왕대비에 아뢰어 처결하지는 않을 예정”⁵³이라고 친정을 선포한다.

외형상 친정의 공식적인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성종 친정의 실질적인 출발은 당시 공식이었던 왕비 간택, 즉 성종의 계비를 맞아들여야 되는 것이었다. 아마도 공혜왕후 한씨의 죽음 뒤에 원자인 연산군을 출산한 숙의 윤씨의 존재 때문으로 추측된다. 명실상부 후계자까지 완전하게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최상이었을 것이다. 이에 성종 7년, 8월 9일 연산군의 생모 숙의 윤씨가 중궁으로 봉해진다.⁵⁴ 그리고 성종 8년 2월 4일 명나라에 주문사로 갔던 심희와 이극돈이 귀국하여 윤씨를 조선의 계비(제헌왕후)로 고명한다는 명 황제의 칙서를 전달함으로써 친정의 모든 요건을 구비한다.⁵⁵

그런데 돌연 3월 말에 들어서서 성종은 제헌왕후 폐출을 대신들과 논의한다. 도대체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사자인 성종의 폐출의

52 『성종실록』 7년 1월 13일.

53 『성종실록』 7년 1월 13일.

54 『성종실록』 7년 8월 9일.

55 계비는 왕비가 사망하거나 지위를 박탈당했을 경우에만 새로 맞이하는 원비(元妃)와 동등한 위상을 가진 자였다. 그리고 국왕이 재임 시 선발되기에 계비가 생산한 왕자는 차기 왕위계승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계비선정을 두고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기도 했기에 당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이다. 윤혜민, 「조선 전기 계비선정 방식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5집(2013), 57쪽.

사는 정희왕후를 통해 공표된다. 정희왕후는 의정부와 육조판서 그리고 대사헌과 대사간을 불러 중궁이 투기를 해서 “작은 주머니에 비상(砒霜)이 들어 있고, 또 굶히는 방법의 서책”을 쥐구멍 속에 숨겨놓고 지나친 행동을 범함으로써 국모의 품위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하면서 대신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요구한다.⁵⁶

성년이 되었다는 확실한 징표로서 공혜왕후 한씨의 요절로 공석이었던 왕후를 다시 들임으로써 성종의 친정이 완결체로의 의미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공적 후원자로서 정희왕후의 역할은 성종의 친정과 함께 종결된 것이었다. 더욱이 사적인 부부문제를 공적 후원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소환한 것은 성종뿐만 아니라 원상과 대신들까지 사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셈이 되었다.

여기에서 핵심은 중궁의 투기나 잘못된 행동의 진위 여부 또는 그 동기나 배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궁의 행위를 일단 죄로 규정한 뒤,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론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영의정 정창손이 보다 완곡하게 옛 고사(古事)를 상고해서 의론할 것을 대답하자 성종의 답은 이미 중궁조차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선례와 관계없이 분명한 처벌이 무엇이나를 결정하라는 압박이었다. 즉 폐비(廢妃)하려는 뜻이었다.⁵⁷

대부분의 신료들, 예를 들어 정창손은 투기를 인지상정으로 보았다는 점, 예조판서 허중은 세간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 안치하여 몇 년간 근신하게 한 뒤 복귀를 제안한 점, 폐비하여 사저로 돌려보내는 것도 원자의 존재 때문에 불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왕후폐출을 반대한다. 문제는 성종의 의지가 이미 폐비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이다. 대신들 대부분이 폐출을 반대하는 논리에 오히려 성종 자신은 사저로 폐비해야 원자의 지위도

56 『성종실록』 8년 3월 29일.

57 『성종실록』 8년 3월 29일.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종묘와 사직, 중외에 유지하여 왕후의 폐출을 공식화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다.⁵⁸

그리고 성종이 대신들에게 말했던 명분은 “이는 한 집안의 정사이니, 내가 처치하는 데에 달려 있을 뿐”⁵⁹이었다. 하지만 앞서 종묘-사직-중외에 유지하겠다는 성종의 뜻을 보면, 성종 자신도 왕후의 폐출이 사적인 문제라고 공언했으면서도, 왜 굳이 신료들을 압박해가면서 공적 의제로 확대하려고 했던 것인지 일관성을 잃은 모습을 보인다. 사실 제헌왕후는 숙의로 있을 때부터 성종과 사이가 원만했고 중궁이 된 후에도 관계가 좋았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연산군을 출산한데다 검소하고 정희왕후-안순왕후-소혜왕후 등 3대비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다.⁶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요건을 완비한 성종의 강고한 리더십 발휘대상이 왕후였다는 사실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게다가 정희왕후의 발언을 빌어 자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성종의 모습 자체도 대단히 의존적이고 조급한 듯 보인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기에서 정희왕후-성종-제헌왕후 3인에게서 각각 경계가 불분명한 공사(公私)의 동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사건 당사자인 제헌왕후의 행동은 퇴락한 가문출신으로 자신을 제도적으로나 공적으로 지원해 줄 정치세력이나 외척세력이 없었던데 따른 자신감 결여에서 비롯했을 가능성도 있다.⁶¹ 이로 인해 그 결과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심리상태였을 수 있다.⁶² 반면 정희왕후를

58 『성종실록』 8년 3월 29일.

59 『성종실록』 10년 6월 2일.

60 한희숙, 「조선초기 성종비 윤씨 폐비폐출 논의과정」, 『한국인물사연구』 4호 (2005), 126쪽.

61 한희숙(2005), 위의 논문, 133쪽.

62 윤씨는 입궁 전부터 퇴락한 집안 살림을 맡았으며, 배를 짜서 부모를 봉양했다고 한다. 따라서 생활력이 강하고 검소하며 겸손한 성품으로 칭찬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왕비 책봉 8개월, 왕자 출산 4개월 뒤에 벌어진

비슷한 3대비는 후궁들을 향한 투기를 가감 없이 보여준 제헌왕후의 강한 성격에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성종 역시 자신을 의지하는 3대비의 우려와 의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과 함께 유교이념에 충실한 성왕군주로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데서 비롯했을 수 있다. 특히 폐비 논의가 있던 지 석 달 뒤 부녀자의 재가금지가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소혜왕후가 여성들의 부덕교육을 위해 『내훈』(內訓)을 만들었던 분위기를 고려하면⁶³, 왕후의 강한 개성에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대응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인지 다음날 성종은 재상들을 모아놓고 현재 사안이 투기로 인해 발생한 사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그리고 독약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국모의 체모를 잃어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별궁에 근신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다.⁶⁴ 더 나아가 성종은 왕후폐출 결정이 사적 감정에 의한 충동적인 조처가 아님을 강조한다. 즉 공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택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이런 논리적 확장이 가능했던 것일까? 성종은 폐출을 반대하는 대신들에게 일의 마땅함(事宜)을 모른다고 힐난하고, 한나라 성제가 황후 조비연(趙飛燕)에 의해 암살되었던 일을 거론하며 자신에게도 비상(非常)한 변(變)이 미칠 경우 대신들이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⁶⁵

그것은 단지 왕후폐출이 성종 자신의 사적 감정이 아니라 국왕의 신변에

비상과 곱하는 책이 발각된 사건은 윤씨가 가벼운 조증을 앓는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일종의 기분장애를 겪기에 욕구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을 생각 못하고 충동적이고 판단력이 저하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문제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서혜진, 『연산군과 폐비 윤씨 양극성 장애가능성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0), 24-28쪽.

63 한희숙(2005), 앞의 논문, 135-136쪽.

64 『성종실록』 8년 3월 30일.

65 『성종실록』 10년 6월 2일.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공적 명분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3대비 역시 성종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폐출해야 안심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성종의 진술을 지지하고 공감했다. 비록 3대비의 사적 돌봄에 대한 강박이 작용했다 할지라도 단지 성종이 윤씨를 사적 감정으로 모함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고, 성종이 왕실과 종사의 미래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기도 하다.⁶⁶

성종도 인정하듯이 집안을 다스리지 못한 소치로부터 국가대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돌변한 왕후폐출 사건은 이제 국왕에 대한 ‘반역’과 ‘역모’로 인식되었고, 윤씨의 부덕이나 성종의 사적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이었기에 출궁시키겠다는 성종의 단호함은 정희왕후에게 제헌왕후의 구제를 요청한 승지들까지 옥에 가두는 강경함으로 표출되었다.⁶⁷ 결국 폐출 결정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논의도 거의 사라지게 된다.⁶⁸

그러나 성종이 제헌왕후의 폐출 저변에 놓인 시급하고 마땅한 공적 문제로 비유한 한 성제의 사례는 오히려 자가당착으로 보인다. 성종 자신이 어리석고 무능한 한 성제와 같고 제헌왕후가 조비연 같은 성격파탄의 여인이라는 말 아닌가? 제헌왕후의 투기가 왕실과 왕위계승의 온전함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암군으로 전락시킨 상황에서 어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 오히려 성종 자신이 한 성제 처지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비유한 것이 부적절한 만큼 본질적으로 왕후폐출 결정이 공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66 방상근, 「조선초기 성종비 윤씨 폐비폐출 논의과정」, 『정치사상연구』 26집 2호 (2020), 122-123쪽

67 『성종실록』 10년 6월 2일.

68 방상근(2020), 위의 논문, 126쪽

궁색한 변명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성종의 반응은 정희왕후의 지속적인 사적 돌봄을 정치적 후원이라는 명분으로 바꾸어 자신의 사적 감정을 합리화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즉 여전히 정희왕후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발휘될 수밖에 없던 시공간적 배경을 모든 행위자들에게 새삼 상기시키는 동시에, 성종을 돌보려는 왕후의 사적 감정 또한 이 지점에서 공적 기준과 교차하면서 공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됨으로써 청년 성종의 정치리더십에 사적 요소의 침투를 불러왔던 것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V. 맺음말

『춘추좌씨전』에 “시호를 붙이는 방법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제도)를 수립한 것을 성(成)이라고 말한다”(諡法, 安民立政曰成.)고 소개되듯이, 묘호 성종(成宗)은 제도의 완비를 성취한 군주에게 붙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도의 완성자로서 성종은 최초 수립청정의 영향으로부터 친정에 이르러서 공사의 경계를 분별함으로써 청정의 리더십을 친정의 리더십으로 긍정적으로 치환하는데 성공한 것일까?

성종은 재위 7년부터 친정을 시작했고 생애 나머지 기간 국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성종 10년 제헌왕후 윤씨의 폐출사건이 일어나고, 13년 폐비 윤씨의 사사, 14년 후원자였던 정희왕후 서거 등 20대에 걸쳐 사적인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인지 호학의 군주로 알려져 있지만 경연의 충실성도 친정이 이루어진 뒤부터 현저하게 낮아지고, 새로운 인재등용보다 기존 훈구 원상과 종친들에게 의존하는 바가 여전했으며, 폐비 윤씨와 왕위계승

자인 연산군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무책임에 가까운 방임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훗날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듯 보인다.

반면 뒤늦게 국왕교육을 받고 이념적 성왕으로의 훈육에 몰입했던 성종의 자존감은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후원자로서 정희왕후와 이에 타협한 훈구 원상들의 세심한 보호와 돌봄 속에서 기획된 경로에 따라 훈련된 성종의 모습은 점진적인 정치적 성숙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정희왕후가 보인 독자적인 정치주체로의 모습-민생의 보존과 안전에 우선했던 점-에서 굳이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편견보다 보편적인 통치자의 양상을 볼 수 있었던 동시에, 소년 성종도 원상대신들과 새로운 긴장관계를 형성해 나갔다는 점은 청정의 독자적 리더십이 친정의 리더십에 반영되어 표출될 것을 예단케 했다.

그런데 성종과 종친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훈구대신들과 타협점을 찾아 공적 후원으로 결집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정희왕후가 보여준 수렴청정의 독자적 리더십은 돋보이지만, 한편으로 성종에 대한 정희왕후의 공적 후원이 사적 돌봄과 얼마나 철저히 구별되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보인다. 소년 성종이 후원자로서 왕후의 청정에 따르고 원상들의 요구에 충실했던 모습에선 사적 돌봄의 개입이 보이지는 않지만, 친정이 시작된 직후부터 불거진 제헌왕후 윤씨와 불화 그리고 폐출사건은 오히려 청년 성종의 사적 감정이 자기 합리화되는 과정을 뚜렷이 보여준다.

정희왕후 역시 이러한 성종의 감정 폭발에 개입하여 윤씨 폐출을 결정했다는 문제점도 드러난다. 물론 그것은 정희왕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윤씨에 대한 불만일 수 있거나 아니면 성종의 불만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돌봄에 대한 강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정희왕후를 비롯한 3대비의 성종에 대한 돌봄의 과도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청년 성종의 혼동을 조장한 셈이 되었던 것일 수 있다. 그럴 경우 돌봄을 목적으로 한 왕후의 개입과 판단이 수렴청정이라는 공적 경로로 투영됨으로써 청년 국왕의 초기 리더십에 사적 의존성을 심어주는 계기를 제공했던 것일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春秋左氏傳』, 『朝鮮王朝實錄』.

2. 단행본

김범, 『연산군 그 인간과 시대의 내면』. 글항아리, 2010.

에드워드 와그너 저, 이훈상·손숙경 역,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007.

이한우, 『성종, 조선의 태평을 누리다』. 해냄출판사, 2006.

함영이, 『정희왕후』. 말글빛냄, 2015.

3. 논문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 유교적 여성 주체의 형성과 내면화 과정」. 『한국문화연구』 13집, 2007, 51-82쪽.

김우기, 「조선 성종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조선사연구』 10집, 2001, 169-212쪽.

김중권, 「조선조 경연에서 성종의 독서력 고찰」. 『서지학연구』 32집, 2005, 77-106쪽.

방상근, 「철인왕 성종의 설득적 리더십」. 『한국학』 34권 2호, 2011a, 275-304쪽.

_____, 「성종의 중재적 리더십과 태평의 정치: 소인논쟁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4권, 2011b, 195-223쪽.

_____, 「성종과 포황(包荒)의 정치: 심술(心術)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권 1호, 2012, 157-180쪽.

_____, 「수성에서 교화로: 세종과 성종의 리더십 비교」.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8권 1호, 2019, 59-93쪽.

_____, 「조선초기 성종비 윤씨 폐비폐출 논의과정」. 『정치사상연구』 26집 2호, 2020, 111-136쪽.

서혜진, 『연산군과 폐비 윤씨의 양극성 장애가능성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송용섭, 「조선 성종대 전반 언론의 동향과 언론 관행의 형성」. 『한국문화』 50집, 2010, 27-55쪽.

_____, 「조선 성종의 우문정치와 그 귀결」. 『규장각』 42집, 2013, 1-41쪽.

- _____, 「조선 성종의 준행과 국왕으로서의 권위창출」. 『역사와 담론』 85집, 2018, 123-156쪽.
- 송재혁, 「정치가 성종의 불교정책」.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5권 1호, 2016, 67-104쪽.
- 오영선, 「조선전기 한성부의 호적업무」. 『서울학연구』 20호, 2003, 39-63쪽.
- 윤혜민, 「조선 전기 계비 선정 방식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5집, 2013, 55-95쪽.
- 임혜련, 「순조 초반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정국변화」. 『조선시대사학보』 15집, 2000, 153-179쪽.
- _____, 「조선시대 수렴청정의 정비과정」. 『조선시대사학보』 27집, 2003, 33-66쪽.
- _____, 「조선 후기 헌종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 『한국인물사연구』 3호, 2005, 197-237쪽.
- _____, 「19세기 신정왕후 조씨의 생애와 수렴청정」. 『한국인물사연구』 10호, 2008, 215-258쪽.
- _____, 「19세기 수렴청정의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48집, 2009, 255-289쪽.
- _____, 「명종 전반기 재이론과 수렴청정 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53권, 2010, 107-134쪽.
- _____, 「한국사에서 섭정, 수렴청정권의 변화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62권, 2012, 173-200쪽.
- _____, 「철종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 『사학연구』 110호, 2013a, 285-326쪽.
- _____, 「헌종초 순원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 『역사와 담론』 66집, 2013b, 209-240쪽.
- _____, 「19세기 국훈과 안동 김문 가세」. 『한국사학보』 57호, 2014a, 227-259쪽.
- _____, 「19세기 수렴청정의 공과 사」. 『역사와 현실』 93호, 2014b, 61-91쪽.
- _____, 「순조초기 정순왕후 수렴청정기의 관인 임용양상과 권력관계」. 『한국학 논총』 41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c, 217-246쪽.
- _____, 「조선 후기 '대리정치'의 권한법주와 왕권」. 『역사와 담론』 85집, 2018, 157-186쪽.
- 조남욱, 「조선시대 부패방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그 현대적 수용」. 『국민윤리 연구』 55호, 2004, 1-37쪽.

- 최승희, 「홍문관의 성립경위」. 『한국사연구』 5호, 1970, 101-115쪽.
- 최이돈, 「성종대 홍문관의 언관화 과정」. 『진단학보』 61호, 1986, 5-44쪽.
- 한춘순, 「성종 초기 정희왕후의 정치 청단과 훈척정치」. 『조선시대사학보』 22집, 2002, 29-74쪽.
- 한희숙, 「조선초기 성종비 윤씨 폐비폐출 논의과정」. 『한국인물사연구』 4호, 2005, 117-155쪽.

국문초록

조선의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시키고 유가적 교의에 충실했던 성왕군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부친의 요절과 차남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예종 서거 후 왕위를 계승한 것은 극적 요소를 담고 있기도 하다. 바로 그 점이 국왕 성종의 초기 정치리더십을 결정짓는 필요조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대왕대비와 훈구대신들의 정치적 후원과 돌봄의 대상의 되었고, 정치적 기반 없이 곧바로 이념적 군주로 훈육되었기 때문이다.

세조 비 정희왕후는 조선왕조 최초의 대왕대비 섭정, 즉 제도로서 수렴청정을 출발시킨 주인공이다. 먼저 정희왕후는 공적 영역의 참여자로서 독자적인 판단기준과 결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한다. 공적 행위자로서 정희왕후는 어린 성종의 후원자라는 역할에 충실한 동시에 민생보존이라는 정치의 기본원칙에 충실했다. 한편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성종의 성년과 함께 종결되고, 청정의 리더십이 국왕성종의 직접적인 정치리더십으로 교체되면서, 성종의 사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희왕후의 사적 돌봄을 공적 후원의 연장으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정희왕후의 리더십에 내포된 사적 돌봄과 보호에의 강박이 성종으로 하여금 공사 경계 짓기를 혼동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일지 모른다.

투고일 2020. 9. 14.

심사일 2021. 1. 19.

게재 확정일 2021. 2. 17.

주제어(keyword) 정희왕후(Queen Jeonghui), 성종(King Seongjong), 수렴청정(regency), 공적후원(public support), 리더십(leadership)

Abstracts

The Interim From Regency Behind the Veil To Direct Government By the King: Borderlin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ion Reflecting Young King Seongjong's Political Leadership

Youn, Dae Shik

King Seongjong of the Joseon Dynasty is evaluated as Sage King who completed the Gyeongguk Daejeon(Code of Statecraft) and devoted himself to the confucian doctrine. But that may have served as a necessary condition to determine the personality and leadership of King Seongjong. Because he was an object of political support and care for the Queen Jeonghui and the entrusted ministers and was immediately disciplined as an ideological monarch without political foundation.

Queen Jeonghui was the first Great Queen to start the regency. First of all, Queen Jeongui's leadership appeared as a public actor making independent judgments and decisions. She was faithful to his role as a public supporter of young King Seongjong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s of preserving people's livelihoods rather than political justification.

Meanwhile, There is a tendency to rationalize King Seongjong's private desires and intentions through the channels of Queen Jeonghui's public support. In the end, King Seongjong's political legacy was decline of public section.